

전자금융이용자 약관 변경안(2020.03.23)

조항	기존	변경안	비고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효성에프엠에스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전자고지결제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약관은 효성에프엠에스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전자고지결제서비스 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자고지결제서비스 추가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이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①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전자고지결제서비스 (이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② '전자고지결제서비스'라 함은 각종 요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서"등의 전자적인 방법으로 자금 내역을 고지하고, 이를 수수하여 그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⑥ '청구서'라 함은 '회사'가 수납기관을 대행하여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전자적인 방식의 고지방법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④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30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9조 회사의 책임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의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처리 불가능 또는 지연사유를 통지한 경우(금융기관 또는 결제수단 발행업체나 통신판매업자가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조항 삭제
제11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에 관한 거래지시의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결제서비스 추가에 따른 서비스 범위의 확대에 따른 변경(only PG → PG & EBPP)
제12조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 기록의 생성 및 보존	제12조【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 기록의 생성 및 보존】	제12조【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기록의 생성 및 보존】	
제14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담당자: 전자금융센터	담당자: 효성CMS	전자금융센터 용어 효성CMS 변경에 따른 변경